

대구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3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361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252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원고승계참가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인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2523 판결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91,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1) 원고에게 16,291,358원을,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1,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승 계 참 가 취 지 ,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2019.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2019.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1) 피고는 2012. 7. 25.부터 2013. 3. 17.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467,15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송금액 중에는 피고가 원고에 계금 납부금으로 송금한 합계 35,600,000원¹⁾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467,150,000원 중 계금 납부금으로 송금한 35,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1,55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8. 4.부터 2013. 3. 21.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661,050,500원을 송금하였다. 위 송금액 중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금 상환금으로 송금한 합계 40,000,000원(=2012. 12. 2.자 20,000,000원 + 2013. 1. 5.자 10,000,000원 + 2013. 1. 17.자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661,050,500원 중 계금 상환금으로 송금한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21,050,500원을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314호 대여금 등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21.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9,49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12. 확정되었다.

2)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위 판결 정본을 기초로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타채10437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기하여 지급받을 판결금 중 청구금액 277,305,01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2.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적격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채권 중 277,305,016원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20. 2.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277,305,01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0. 2. 29.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그 이행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과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의 성격 (금전소비대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에게 차용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돈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변제한 것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

나. 금전소비대차와 투자약정의 구별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지나치게 얽매일 것은 아니고, 그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이고, 투자수익의 발생 여부는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반면,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란 차주가 대주로부터 금원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고율의 수익을 보장받는 경우, 이를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주가 차주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금을 약정한 시기까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률행위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임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약정이라는 형식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처분문서 등에 '투자', '수익' 등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즉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는 투자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투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전망, 수익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거나 이익의 분배비율, 투자 손해의 분담비율 등에 관하여 약정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약정에 관한 서면도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의 사업에서의 수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로부터 원금을 상당히 초과하는 돈을 지속적으로 송금 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송금 거래를 반복하였다. 위 금전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일반적인 투자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

4.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가. 관련 법령

1)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4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피고가 2012. 7. 25.부터 2013. 3. 17.까지 원고에게 대여한 이 사건 대여금은

431,550,000원이고 원고가 2012. 8. 4.부터 2013. 3. 21.까지 피고에게 원리금으로 변제한 이 사건 변제금은 621,050,500원이다. 이 사건 변제금 중 이자로 지급된 돈은 189,500,500원(= 621,050,500원 - 431,550,000원, 이하 위 189,500,500원을 '이 사건 변제이자'라고 한다)이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구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그 최초 대여일인 2012. 7. 1.에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최후 대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3. 3. 31.까지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97,098,750원(= 431,550,000원 × 30% × 9개월 ÷ 12개월)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제이자 189,500,500원 중 위와 같이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 계산된 이자 97,098,750원(=431,550,000원 × 30% × 9개월 ÷ 12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된 92,401,750원 중 원고가 구하는 91,85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 91,8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각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기 이전의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2. 28.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서 합계 16,291,358원(= ① 4,602,739원 + ② 6,947,650 + ③ 4,740,969원)이고, 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① 원고는 2018.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그 청구취지를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8. 9.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018. 9. 12. ~ 2019. 1. 29. 140일간의 발생분

$4,602,739\text{원} = 80,000,000\text{원} \times 15\% \times 140\text{일} \div 365\text{일}$

② 원고는 2019. 1. 25. 청구취지를 88,791,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2019. 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9. 7. 15.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2%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019. 1. 30. ~ 2019. 9. 24. 238일간의 발생분

$6,947,650\text{원} = 88,791,750\text{원} \times 12\% \times 168\text{일} \div 365\text{일}$

③ 원고는 2019. 9. 23. 청구취지를 91,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2019. 9.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019. 9. 25. ~ 2020. 2. 28. 157일간의 발생분

$4,740,969\text{원} = 91,850,000\text{원} \times 12\% \times 157\text{일} \div 365\text{일}$

라. 피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1,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일 다음 날인 2020.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악의의 비채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 없음을 알고도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에 정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사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에 따른 채권과 채무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보험영업을 하던 사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여금과 이 사건 변제금의 거래가 위 보험영업 또는 원고의 상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금 91,85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2.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이지혜 판사 이준영 공가로 서명날인 불능